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21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위상 · 김선교 · 신성범
박성훈 · 김은혜 · 윤한홍
이종욱 · 신동욱 · 김성원
강승규 · 김미애 · 김기현
박충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총 연장기간이 2년인 폐기물 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과 달리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제3호”를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같은 항 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③ (생 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 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 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 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 ----- ----- ----- ----- -----제2호에 따른 폐기 물 중간처분업, 같은 항 제3호- ----- ----- ----- ----- -----.
⑤ ~ ⑰ (생 략)	⑤ ~ ⑰ (현행과 같음)